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2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
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 신설(안 제6조의2)

나.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
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신설(안 제13조제9호)

다.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
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 신설(안 제16조제5호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2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8. 27. ~ 9. 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9.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

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) (현행과 같음) <u>제6조의2(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 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
제13조(예산지원) ①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 9. (생 략)	제13조(예산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 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	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국가 간 분쟁,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-	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(1) 발생요인 :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따른 비용지원
- (2) 관련 조문 : 안 제13조(예산지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업체별 지원 금액은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금액 중 지원 금액 추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액

- '19년 소요액 : 1,000,000천원
- 지원 대상 : 일본수출 규제에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(무역업, 여행사, 숙박업, 외식업 등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개 업체당 평균 지원액	2019년 편성 요구예산	비 고
금 액	1,000	1,000,000	업체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변경 등 에 소요되는 지원액 추정

나. 연도별 비용 추계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계
시비(a)	0	0	0	0	0	0
구비(b)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계(a+b)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 : 구비예산 편성 요구('19년 2차 추가경정예산 요구)

5. 덧붙이는 의견 : 비용추계의 세부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우혜원 (☎ 3153-8572)